

# 경운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원의 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대상)**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구분 및 정의)** 교원의 업적은 교육, 산학 및 봉사, 연구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1. 교육업적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산학 및 봉사업적이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교류한 실적 및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 기여하는 봉사활동 실적을 말한다.
3. 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또는 교내에 기여한 정책연구 결과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업적)** 업적평가는 최근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에 대해 실시하되, 당해년도에 평가받지 못한 업적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익년도에 평가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예외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적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휴직, 휴가, 징계의 사유에 의해 평가대상기간 중 한 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2. 국외여행 교원 또는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교육, 산학 및 봉사업적 자료가 없는 경우

## 제2장 평가절차 및 기구

**제6조(평가 대상기간)** ① 업적평가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년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임용일이 업적의 평가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한 학기만의 업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업적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심의
  - 2. 교원업적 평가
  - 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 4. 기타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의 업적에 대한 평가조서【별표 1】및 증빙서류를 매년 9월 30일 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해당 행정부서장은 증빙자료 및 개인별 평가조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무처장은 확인된 평가 조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위원회는 10월31일까지 업적평가를 완료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무처장은 11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 신청 및 처리)**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재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평가기준

**제10조(교육업적)** ① 교육업적은 강의,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은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시수를 교육업적영역의 최저평점 1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교원의 교육역량 및 수업개선을 위해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업적평가 점수로 가점할 수 있다.
  - 1.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참여실적(1회당 1점)
  - 2. 특성화분야 교과목 개발 또는 운영(건당 2점)
  - 3. 특성화분야 교육과정 개발 또는 운영(건당 2점)
  - 4. 강의공개(MOOC, OCW, 동영상 등)(건당 2점)

5. 새로운 교수법 및 강의방식 다양화 노력(건당 2점)
6. 외국어강좌(강의전부를 외국어로 진행한 강좌)(학점당 2점)
7. 강의우수교원(학기당 5점)
8. 강의포트폴리오 작성(과목당 2점)
9. 기타 총장의 승인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산학 및 봉사업적)** 산학 및 봉사업적은 행정보직(처장) 교원과 그 외 교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행정보직 교원은 행정보직 수행과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교원은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구업적)** ①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4】와 같다.

**제13조(연구업적물 심사)** ① “삭제”

- ② 본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 ③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연구실적물 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다.
- ④ 정년이 보장된 교원도 연구실적물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⑤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은 연구업적영역의 ‘저서’부문의 실적을 각 배점기준에 5%의 점수를 가점하여 연구업적평가점수에 반영한다.
- ⑥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은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시수(1학점당 1점)를 연구실적으로 상호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교원업적의 예외 평가)** ① 제5조 제2호의 사유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는 연구업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 교육, 산학 및 봉사업적의 평점은 해당학부(과) 교원의 평균점을 배점한다.

- ② 본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제15조(중복 연구업적의 예외평가)** ① 중복 및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중복 및 표절 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피평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누적인정 연구업적)** 교원의 기간제, 승진 및 정년보장 교원임용평가를 위해서는 현 직위 평가대상 기간 중의 연구업적은 누적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업적 증빙자료)** 연구업적 평가를 위해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서 : 원본 및 사본
2. 논문 : 학술지 또는 논문집 원본 및 별쇄본(또는 사본),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검증된 논문은 미제출 가능
3.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초록집 원본 및 사본
4. 공연, 발표 : 팸플릿 원본(또는 사본) 원본 및 관계증빙자료
5. 기타 : 관계 증빙자료(연구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포함)

##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 평가 결과는 교원의 기간제 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 임용, 교내연구비 지급 및 급여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평가 점수 산출시 당해연도 점수미달자 중 유예교원은 다음연도 결과 산출시 미충족 점수를 제외하고 인정한다.

**제19조(재임용기준)** ① 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100%까지는 산학업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저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직 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비고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업적	연구업적	
조교수	4년	150	250	780	120	1,300
부교수	6년	450	400	1,800	350	3,000
교수	10년	750	650	3,000	600	5,000

②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평가는 산학 및 봉사업적을 제외 할 수 있으며, 연구업적의 최저 평점은 연간 100점으로 한다. 연구업적의 평가는 제출된 실적물 만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업적 부족 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평가는 산학업적만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산학업적의 평가는 제출된 실적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산학업적 부족 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④ 정관 제39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정해 임용된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및 평점기준은 환산하여 적용한다.

⑤ 비행교원의 재임용은 교육,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하되, 비행시간으로 대체한다. 비행시간은 교육 및 연구업적평가에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승진임용기준)** ①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20%이상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 후보지) 이상,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이어야 하며, 각종 유명학술지등에 게재되어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승진시 우선 배려한다. 단,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100%까지는 산학업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초재임용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 단축될 수 있으며, 최저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봉사업적 평점이 연간 75점 이하이면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특히 승진기간 내에 연구업적이 충족되지 못하여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비행교원의 승진임용심사평정에 필요한 업적은 교육,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하되, 비행시간으로 대체한다. 비행시간은 교육 및 연구업적평가에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의 승진 임용심사평정에 필요한 업적은 각 영역별 최저평점기준으로 하되,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50%까지 교육업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비고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업적	연구업적	
조교수→부교수	6년	450	400	1,800	350	
부교수→교수	6년	450	400	1,800	350	

제21조(업적의 상대평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또는 직위별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우수교원 선정 및 지원) 교원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사무의 관리) 업적평가사무 중 교육 및 봉사업적은 교무처, 산학 및 연구업적은 산학연구처에서 관리한다.

제24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교원업적평가조서

년도 업적평가 내용을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

제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기획분야 담당: (인)   평가자 : 기획처장 (인)

교무분야 담당: (인)   평가자 : 교무처장 (인)

학생분야 담당: (인)   평가자 : 학생처장 (인)

산학연구분야 담당: (인)   평가자 : 산학협력단장 (인)

교원업적평가위원장 귀하

### 교육업적평가 (1. 교무분야)

기간 :

소속 :

제출자 :

(인)

평 가 목	평 가 기 준	점수	교육업적내용	평점	비고	
수업준비	1. 수업계획서 입력 준수 ① 강좌별 수업계획서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최대5점)	(5) 10	1학기			
			2학기			
수업운영	2. 강의학점 (총장 및 보직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① 미달되는 인정 학점 당 1점 감점	10				
	3. 강의일수 및 강의시간 (야간 제외, 최대5점) ① 주당 3일 이상 강의 : 0점 감점      ② 1일 5시간 이하 강의 : 0점 감점 ② 주당 2일 강의 : 1점 감점          ③ 1일 6시간 강의 : 1점 감점 ③ 주당 1일 강의 : 2점 감점          ④ 1일 7시간 이상 강의 : 2점 감점	(5) 10	1학기			
			2학기			
	4. 수업관리 ① 강좌별 수업시간 무단변경(무단결강) 1회당 1점 감점(최대5점) ② 강좌별 수업관리 및 평가 민원사항 미조치 1회당 1점 감점(최대5점)	(5) 10	1학기			
			2학기			
	5. 휴강 및 보강 ① 강좌별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1회당 2점 감점(최대5점) ② 강좌별 보강 미실시 1회당 2점 감점(최대5점)	(5) 10	1학기			
			2학기			
	6. 출결관리 ① 강좌별 스마트출결시스템 1회 미실시마다 1점 감점(최대5점)	(5) 10	1학기			
			2학기			
	수업평가	7. 성적평가 관련기간 ① 강좌별 성적공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최대5점) ② 강좌별 성적확정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최대5점) ③ 강좌별 성적평가내역서 제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최대5점) ④ 성적정정 1건당 1점 감점(최대 5점)	(5) 10	1학기		
			2학기			
8. 교수자가평가(CQI보고서) ① 강좌별 교과목CQI보고서 제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최대5점)		(5) 10	1학기			
			2학기			
9. 강의평가 ① 강좌별 강의평가점수 4.0이상(5점), 3.5이상(4점), 3.0이상(3점), 3.0미만(2점) (최대5점)		(5) 10	1학기			
			2학기			
수업역량강화 (수업개발)	10. 제 10조 3항 1호 ~ 9호					
			평 점 합 계			
- 평가기준 1,4,5,6,7,8,9번 학기별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만점점수-{(평가기준별 감점점수) / (강좌 수 × 평가기준 개수)} - 굵은 선 안쪽으로만 기입해 주십시오. (단,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는 1학기 점수이며, 평점은 연간점수를 기재합니다.			확 인 (인)			
			담 당 (인)			



### 교 육 업 적 평 가 (2. 학생분야)

기 간 :

소 속 :

제 출 자 :

(인)

평 가 목	평 가 기 준	점수	교육업적내용	평점	비고
학생지도	1. 학부(과)별 취업률 (★) ① 80%이상 또는 100명 : 20점 ② 70%이상 또는 80명 : 16점 ③ 60%이상 또는 60명 : 12점 ④ 50%이상 또는 40명 : 8점 ⑤ 50%미만 또는 20명 : 4점	20			
	2. 학생개별 상담실적(지도교수) (★) ① 80%이상 : 15점 ② 70%이상 : 13점 ③ 60%이상 : 10점 ④ 50%이상 : 7점 ⑤ 50%미만 : 3점	15			
	3. 단체지도 실적(지도교수 미배정자)(기입하세요)				
	4. 대학원(일반 및 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 배출 학생수 (★) (지도교수에 한함, 공동지도 교수의 경우 1/n으로 한다.) 석사 : 배출인원 × 2점 박사 : 배출인원 × 3점	5			
	5. 학교 및 학부(과) 동아리 지도실적 (★)	5			
	6. 학교 및 학부(과) 학생봉사활동 지도실적	5			
	7. 행정협조 (★) (학생지도 보고서 및 학생처 서류제출기간 - 1일 이상 지연 시 1점 감점)	(5) 10			
			1학기		
			2학기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 굵은 선 안쪽에서만 기입해 주십시오. (단,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는 1학기 점수이며, 평점은 연간점수를 기재합니다.  
 ※ 단체지도실적 : 이음프로그램, 소모임지도 등등

### 봉사업적평가 (1. 보직분야)

기간 :

소속 :

제출자 :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봉사내역			평점	비고
			내용	기간	비고		
보직활동	행정보직 (처장) 수행 (★) 근무평정에 따라 차등배점 - 6개월 이상 수행한 보직 중 1건만 인정	400					
기타보직 또는 위원회활동	기타 보직 또는 상설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실적 (위원회 중복 인정)	300					
					평점합계		
					확인 (인)		
					담당 (인)		

※ 굵은 선 안쪽으로부터 기입해 주십시오.  
(단,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점수는 연간점수이며, 평점도 연간점수를 기재합니다.

### 봉사업적평가 (2. 교내·외 활동분야)

기간 :

소속 :

제출자 :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봉사내역			평점	비고
			내용	기간	비고		
근무활동	1. 품위 유지 2. 제 규정 준수 ① 구두경고, 독촉, 재협조 : 1~38점 감점 ② 서면경고 : 30점 감점 ③ 경징계 이상 : 38점 감점	38					
교내활동	1. 학부(과) 홈페이지관리	5					
	2. 건학이념 실천 정도	10					
	3. 교내 봉사 (장학금 수주·출연, 기자재·도서 등의 기부체납, 발전기금 유치, 교육기부, 재능기부 등)	7					
	4. 국책사업 및 대학(학과)발전계획 집행 및 운영 (대학구조개혁사업, 대학기관인증평가, 링크사업, ACE사업, PRIME사업, 기타 총장의 승인사업)	15					
대외활동	1. 학술단체 임원 2. 사회기관 강연, 자문 봉사 3. 언론매체 기고, 출연	5					
활동성과	1. 학부(과)별 신입생 충원율 ① 100% : 20 점 ② 90%이상 : 18 점 ③ 80%이상 : 16 점 ④ 80%미만 : 12 점	20					
	2. 학부(과)별 재학생 충원율 ① 90%이상 : 20 점 ② 85%이상 : 18 점 ③ 80%이상 : 16 점 ④ 80%미만 : 12 점	20					

※ 굵은 선 안쪽으로는 기입해 주십시오.  
(단,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점수는 연간점수이며, 평점도 연간점수를 기재합니다.

평점합계		
확인(인)		
담당(인)		

### 산 학 업 적 평 가 (1. 행정보직자용)

기 간 :

소 속 :

제 출 자 :

(인)

평 가 목	평 가 기 준	점수	산학업적내역			평점	비고
			내 용	기 간	비 고		
산학협력	1. 국책사업 기획/집필 위원 참여	① 6개월 이하(50점) ② 6개월 초과(100점)	300				
	2. 산학관련 발전 아이디어 제출	① 제출건당30점 ② 채택시 건당50점					
	3. 교외 협의회/기관 위원회 활동(건당30점)						
	4. 교외 협의회/기관 회원 활동(건당20점)						
	5. 교외 컨퍼런스/ 세미나 유치	① 국제(건당50점) ② 국내(건당30점)					
	6.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발표/패널(건당20점)						
	7. 교외 컨퍼런스/세미나/교육/산학워크숍 참석(건당10점)						
	8.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MOU체결	① 국제(건당50점) ② 국내(건당20점)					
	9.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관리(건당5점)						
	10. 사회이사 활동(건당30점)						
	11. 교외관련 심사/평가/출제 위원활동(건당10점)						
	12. 기술지도·경영자문(건당20점)						
	13. 기관/단체협력/협정체결(건당20점)						
	14. 외부기관 수상실적(건당30점)						
	15. 기업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① 3개월 이하(70점) ② 3개월 초과(150점)					
<p>※ 굵은 선 안쪽으로부터 기입해 주십시오. (단,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점수는 연간점수이며, 평점도 연간점수를 기재합니다.</p>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 연구 업 적 평 가(1)

### 가. 수상 및 공훈

구 분	발 표 내 용	학술회의명	발표자수 (본인포함)	소 속 : 주최기관명	제 출 자 : 참가장소	참가기관	평점	비고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구분란 설명 : 해당코드를 기입하시오.

100. 국제대회 또는 국제단체 수상

110. 국내전국규모학회 또는 공공단체 수상

120. 국가훈장

130. 국가포상

※ 굵은 선 안쪽으로만 기입해 주십시오.

※ 공간이 부족 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논문 및 학위논문

구분	논문 제목	기간 :	소속 :	제출자 :			비고	평점	비고
		공동연구자수 (본인포함)	계재학술지						
			학술지명	집(권,호)	수록면				
							평점 합계		
							확 인 (인)		
							담 당 (인)		

구분란 설명 : 해당코드를 기입하십시오.  
 200. 국제전문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  
 210. 국제일반학술지  
 220.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등재후보지)  
 230. 우리대학 연구소 논문  
 240. 국내일반학술지  
 250. 박사 학위 논문

- ※ 굵은 선 안쪽으로만 기입해 주십시오.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연구업적평가(2)

다. 학술대회 발표

기 간 :

소 속 :

제 출 자 :

(인)

구 분	발 표 내 용	학술회의명	발표자수 (본인포함)	주최기관명	참가장소	참가기관	평점	비고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구분란 설명 : 해당코드를 기입하시오.

300.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

310. 국내 전문학술대회 발표논문

320. 국내 학술대회 발표논문

※ 굵은 선 안쪽으로만 기입해 주십시오.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라. 저서

기 간 : 소 속 : 제 출 자 : (인)

구 분	저 서 명	저자수 (본인포함)	발 행 처	발행 년월일	지면수	조판수	평점	비고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구분란 설명 : 해당코드를 기입하시오.  
 400. 국외저서(초판)  
 410. 국내저서(초판)  
 420. 국외저서(개정판)  
 430. 국내저서(개정판)  
 440. 번역서(초판)  
 450. 편역서(초판)  
 460. 번역서(개정판)  
 470. 편역서(개정판)

- ※ 저서는 등록된 출판사를 통하여 발간된 것에 한함.
- ※ 굵은 선 안쪽으로만 기입해 주십시오.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은 5% 가점한다.

### 연구업적평가(3)

마. 예능계 전시 및 발표

기 간 : 소 속 : 제 출 자 : (인)

구 분	전시 및 발표회명 (작 품 명)	발 표 장 소	발표자수 (본인포함)	발표년월일	평점	비고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구분란 설명 : 해당코드를 기입하십시오.  
 510. 국제공모전(특선이상)  
 511. 국제공모전(입선이상)  
 520. 전국공모전(특선이상)  
 521. 전국공모전(입선이상)  
 530. 지역공모전(특선이상)  
 531. 지역공모전(입선이상)  
 540. 국제전시회(개인전)  
 550. 국제전시회(초대전/단체전)  
 560. 국제전시회(심사위원)  
 570. 광역이상전시회(개인전)  
 580. 광역이상전시회(초대전/단체전)

- \* 굵은 선 안쪽에서만 기입해 주십시오.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연구업적평가(5)

### 사. 특별연구

기 간 :

소 속 :

제 출 자 :

(인)

구 분	연 구 제 목	공동연구자수 (본인포함)	연구기간	발표년월일	평점	비고
				평 점 합 계		
				확 인 (인)		
				담 당 (인)		

구분란 설명 : 해당코드를 기입하십시오.

700. 외부연구비수탁

710. 연구보고서

※ 굵은 선 안쪽으로만 기입해 주십시오.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교원업적평가 (비행교원용)

기간 :

소속 :

제출자 :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교육업적내용		평점	비고
교육업적	1. 비행시간 ① 학기당 240시간 이하 : 32점 ② 학기당 240시간 이상 : 37.5점  ※ 6.4시간당 1점 추가		1학기	시간		
			2학기	시간		
기타보직 또는 위원회활동	1. 비행시간 ① 학기당 240시간 이하 : 25점 ② 학기당 240시간 이상 : 30점  ※ 8.4시간당 1점 추가		1학기	시간		
			2학기	시간		
					평점합계	
					확인 (인)	
					담당 (인)	

※ 굵은 선 안쪽에서만 기입해 주십시오. (단,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는 1학기 점수이며, 평점은 연간점수를 기재합니다.

【별표 2】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년간 150점이상)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학기)	배점 한도 (년간)		
강의 (90 이상) 12)	수업준비	1.수업계획서 제출	강좌별 수업계획서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5	10	
	수업운영	2.강의학점	미달되는 인정 학점 당 1점 감점 (총장 및 보직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	10	
		3-1.강의 시간 (야간 제외)	① 1일 5시간이하 : 0점 감점 ② 1일 6시간이하 : 1점 감점 ③ 1일 7시간이하 : 2점 감점	5	10	
		3-2.강의 일수 (총장 및 보직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예외)	① 주당 3일 : 0점 감점 ② 주당 2일 : 1점 감점 ③ 주당 1일 : 2점 감점			
		4.수업관리	① 강좌별 수업시간 무단변경(무단결강) 1회당 1점감점 ② 강좌별 수업관리 및 평가 민원사항 미조치 1회당 1점감점			5
		5.휴강 및 보강	① 강좌별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1회당 2점감점 ② 강좌별 보강 미실시 1회당 2점 감점	5	10	
		6.출결관리	강좌별 스마트출결시스템 1회 미실시마다 1점 감점	5	10	
	수업평가	7.성적평가 관련기간 (각 항목별 최대 5점)	① 강좌별 성적공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② 강좌별 성적확정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③ 강좌별 성적평가내역서 제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④ 성적정정 1건당 1점 감점	5	10	
		8.교수자가평가 (CQI보고서)	강좌별 교과목CQI보고서 제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5	10	
		9.강의 평가 1)	① 4.0이상 : 0점 감점 ② 3.5이상 : 1점 감점 ③ 3.0이상 : 2점 감점 ④ 3.0미만 : 3점 감점	5	10	
	수업역량 강화 10.	①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참여실적 2)		1회당 1점	-	-
		② 특성화분야 교과목 개발 또는 운영 3)		건당 2점		
③ 특성화분야 교육과정 개발 또는 운영 4)		건당 2점				
④ 강의공개(MOOC, OCW, 동영상 등) 5)		건당 2점				
⑤새로운 교수법 및 강의방식 다양화노력 6)		건당 2점				
⑥외국어강좌 (강의 전부를 외국어로 진행한 강좌) 7)		학점당 2점				
⑦강의우수교원 8)		학기당 5점				
⑧강의포트폴리오 작성 9)		과목당 2점				
학 생 지 도 (60)	취 업	학부(과)별 취업률 10)	80%이상 또는 100명 : 20점 70%이상 또는 80명 : 16점 60%이상 또는 60점 : 12점 50%이상 또는 40명 : 8점 50%미만 또는 20명 : 4점	-	20	
	학생지도	학생개별 상담실적	① 80%이상 : 15점 ② 70%이상 : 13점 ③ 60%이상 : 10점 ④ 50%이상 : 7점 ⑤ 50%미만 : 3점	-	15	
		단체지도 실적 11)	(지도교수미배정자) (기입하세요)	-	-	
		대학원(일반 및 특수대학원 포함)석.박사 배출 학생수	지도교수에 한함 석사 : 배출인원 × 2점 박사 : 배출인원 × 3점 공동지도 교수의 경우 1/n으로 한다	-	5	
		학교 및 동아리 지도실적	1개 동아리(학기당) 지도교수에 한함	-	5	
		학부(과) 학생봉사활동 지도실적		-	5	
행정협조	학생지도 보고서 및 학생처 서류제출기간	1일 이상 지연시 1점 감점	5	10		



- 1) 강의평가 : 강의 설문지에 의거 평가함
- 2)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참여실적 :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각 사업단에서 '교수법향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된 경우 인정하며, 학과 단위의 공식적인 교수법 워크숍 및 회의의 경우 총장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함, 또한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 8시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3) 특성화분야 교과목 개발 또는 운영 : 대학차원의 사업(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프라임사업, LINC+사업,CK사업, ACE사업 등)의 교재개발은 강의계획서에 해당내용(교재 및 교안명, 활용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교무처, CTL, 해당 사업단의 승인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함
- 4) 특성화분야 교육과정 개발 또는 운영 : 대학차원의 사업(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프라임사업, LINC+사업,CK사업, ACE사업 등)을 위한 전공트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교무처, CTL, 해당 사업단의 확인 및 승인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함
- 5) 강의공개(MOOC, OCW, 동영상 등) : 강의공개는 교양 및 전공과목을 MOOC, KOCW기준에 따라(최초 신규개발에 한함) 동영상촬영이나 강의제작도구를 활용하여 강의를 제작하여 10주 이상 교내 또는 교외에 공개한 경우 건당 2점, 최대 10점을 인정함
- 6) 새로운 교수법 및 강의방식 다양화 노력 : PBL(문제중심해결학습), CBL(사례기반학습), 액션러닝 등 다양한 교수법 활용, Flipped 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강의운영방식 등을 적용 등을 말하며, 강의계획서에 해당내용(운영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7) 외국어강좌(강의전부를 외국어로 진행한 강좌) : 교무처에 원어강의 과목으로 등록된 강좌에 한하여 인정함
- 8) 강의우수교원 : 강의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교무처 추천교수에 한함
- 9) 강의포트폴리오 작성 :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수업내용, 교과목개선(CQI보고서), 수업평가샘플 등을 입력하거나 제출한 경우 과목당 2점을 인정한다. 단, 교무처에 등록된 강좌에 한하여 인정한다.
- 10) 학부(과)별 취업률 : 교원업적 평가대상기간 중의 졸업생의 총 취업률을 기준하여 학부(과)별로 평가함
- 11) 단체지도 실적 : 공식적 학생행사(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외 학생지도 활동, 학생자치기구 주관 행사지도 활동)에 참여 실적
- 12) 평가기준 1,4,5,6,7,8,9번  

$$\text{학기별 평가기준 점수} = \text{평가기준만점점수} - \{ \sum (\text{평가기준별 감점점수}) / \text{강좌 수} \times \text{평가기준 개수} \}$$

【별표 3】

산학 및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년간 850점)

부 문	분 류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한도
전체 교원 (봉사) (150)	기타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	기타보직 또는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위원회 중복 인정)	위원회 중복 인정	~300
	근무활동	품위유지 2)	① 구두경고, 독촉, 재협조 : 1~38점 감정 ② 서면경고 : 30점 감점 ③ 경징계 이상 : 38점 감점	38
		제 규정 준수 3)		
	교내활동	학부(과) 홈페이지관리		5
		건학이념 실천정도		10
		교내 봉사 4)	장학금 수주.출연, 기자재·도서 등의 기부체납, 발전기금 유치, 교육기부, 재능기부 등	7
		국책사업 및 대학발전계획 집행 및 운영	대학구조개혁사업, 대학기관입증평가, 링크사업, ACE사업, PRIME사업, 기타 총장의 승인사업	15
	대외활동	학술단체 임원 5)	건당 1점	7
		사회기관 강연, 자문 봉사 6)		
		언론매체 기고, 출연 7)		
활동성과	학부(과)별 신입생 충원율	① 100% : 23점 ② 90%이상 : 18점 ③ 80%이상 : 12점 ④ 80%미만 : 9점	20	
	학부(과)별 재학생 충원율	① 90%이상 : 20점 ② 85%이상 : 18점 ③ 80%이상 : 16점 ④ 80%미만 : 12점	20	
행정 보직자 (산학) (700)	보직활동	행정보직(처장)수행 8)	근무 평정에 따라 차등 배점(6개월 이상 수행한 보직중 1건만 인정)	400
	산학협력	국책사업 기획/집필 위원 참여 9)	① 6개월 이하(50점) ② 6개월 초과(100점)	300
		산학관련 발전 아이디어 제출	① 제출건당30점 ② 채택시 건당50점	
		교외 협의회/기관 위원회 활동 10)	건당 30점	
		교외 협의회/기관 회원 활동 11)	건당 20점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유치	① 국제 건당 50점 ② 국내 건당 30점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발표/패널 12)	건당 20점	
		교외 컨퍼런스/세미나/교육/산학워크샵 참석	건당 10점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MOU체결 13)	① 국제 건당 50점 ② 국내 건당 20점	
		가족회사(기관) 유지 및 관리	건당 5점	
		사외이사 활동	건당 30점	
		교외관련 심사/평가/출제 위원 활동 14)	건당 10점	
		기술경영자문	건당 20점	
		기관/단체협력/협정체결	건당 20점	
		외부기관 수상실적	건당 30점	
기업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① 3개월 이하 70점 ② 3개월 초과 150점			

부 문	분 류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한도
행정 보직 제외 교원 (산학) (700)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업체 현장방문	건당 10점	200
		수요조사		
		추수지도 방문		
		현장 실습지도	학기당 50점	
		산학관련 현장견학 인솔	건당 20점	
		캡스톤디자인지도 15)		
		학생창업지도 16)	건당 10점	
		학생대상 산학특강/세미나 유치 및 주관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유치 17)	건당 30점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강의	학기당 10점	
		재직자대상 교육 18)	시간당 5점	
		재직자대상 교육과정 개발	건당 50점	
		프로젝트Lab, 비즈니스Lab 지도	학기당 50점	
		산학교육과정개발	건당 50점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업체 연구비 수혜 19)	100만원당 5점	200
		기부금기탁	10만원당 5점	
		기업부설연구소유치	건당 50점	
		신기술/제품인증	건당 50점	
		신규 교수 창업	건당 150점	
		교수 창업 유지/운영	건당 50점	
		국내특허	① 출원 건당 : 20점 ② 등록 건당 : 70점	
		국제특허	① 출원 건당 : 50점 ② 등록 건당 : 100점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① 출원 건당 : 20점 ② 등록 건당 : 50점	
		프로그램등록	건당 30점	
		기술이전 20)	50만원당 10점	
		국책사업 기획/집필 위원 참여 9)	① 6개월 이하 : 50점 ② 6개월 초과 : 100점	
	산학협력 봉사활동	산학관련 발전 아이디어 제출	① 제 출 : 건당30점 ② 채택시 : 건당50점	300
		교외 협의회/기관 위원회 활동 10)	건당 30점	
		교외 협의회/기관 회원 활동 11)	건당 20점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유치	① 국제 건당 50점 ② 국내 건당 30점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발표/패널 12)	건당 20점	
		교외 컨퍼런스/세미나/교육/산학워크샵 참석	건당 10점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MOU체결 13)	① 국제 건당 50점 ② 국내 건당 20점	
		가족회사(기관) 유지 및 관리	건당 5점	
		사외이사 활동	건당 30점	
		교외관련 심사/평가/출제 위원 활동 14)	건당 10점	
기술경영자문	건당 20점			
기관/단체협력/협정체결	건당 20점			
외부기관 수상실적	건당 30점			
기업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① 3개월 이하 70점 ② 3개월 초과 150점			

- 1) 위원회 위원 또는 기타 보직 활동 : 총장이 인정한 각종 교내 상설위원회 위원이나 기타 보직활동 실적을 토대로 하여 총장이 평가한다. 단, 평가는 실·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품위유지 :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

- 추시켜 총장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감점
- 3) 제규정 준수 : 교내 제규정 및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장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감점
  - 4) 교내 봉사 : 1. 학생 장학금 출연 또는 수주  
2. 기자재 도서 기부체납 또는 헌납  
3. 대학발전 기금 수주 출연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항목건수에 따라 배점
  - 5) 학술단체 임원 : 인정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사)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한하여 배점
  - 6) 자문위원 : 국가기관(기초자치단체이상) 또는 기타 공인단체(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위촉에 의해 3개월 이상 자문활동을 수행한 경우
  - 7)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전공과 관련하여 일간신문 또는 권위 있는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들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
  - 8) 행정보직 평가 :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해당 보직을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이 평가한다.
  - 9) 국책사업 기획/집필 위원 참여 :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체를 위한 국책사업에 대학이 승인하여 기획 및 집필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0) 산학 협의회/기관 위원회 활동 : 각종 산학 협의회나 기관에 운영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는 경우 연간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1) 산학 협의회/기관 회원 활동 : 각종 산학 협의회나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간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2) 강연 :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1시간 이상 강연한 경우 배점함. 단 평가대상 기간 중 동일한 프로그램의 업적은 회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 13) 신규가족회사(기관)유치 및 MOU체결 : 산학활동에 필요한 기업체나 기관을 우리대학의 가족회사나 협력기관으로 유치하거나 상호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4) 심사, 평가, 출제위원 : 기초 지방자치 단체급 이상 공인단체에 의해 위촉된 심사, 평가 및 출제위원. 동일기관의 위촉은 1건만 인정
  - 15) 캡스톤디자인지도 : 캡스톤디자인을 위해 팀 단위나 아이템 단위로 지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6) 학생창업지도 :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이나 아이템 단위로 지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7)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유치 :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과정 1개 반을 유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8) 재직자대상 교육 :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분야의 교육이나 실험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시간을 단위로 1건으로 인정한다.
  - 19) 산업체 연구비 수혜 : 대학 및 학부(과)를 위한 연구비 또는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연구비
    - 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참여인력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② 단, 계약의 당사자가 순수 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 20) 기술이전 : 경운대학교 또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등록한 연구업적만 인정한다.
    - ① 특허등록 및 출원 : 전체 비용의 50% 지원
    - ② 지적소유권(기술료) : 수익의 70% 지급
  - 21) 산학관련 발전 아이디어 제출 : 5페이지 이상의 아이디어

【별표 4】

###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부 문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 고	
수상 및 공훈 (연구 및 예체능)	국제대회 또는 국제단체 수상 1)		100		
	국내전국규모학회 또는 공공단체 수상 2)		50		
	국가훈장 3)		100		
	국가포상 4)		50		
논문 5)	국제전문학술지 6)		200		
	국제일반학술지 7)		150		
	국내전문학술지 8)		150		
	우리대학 연구소 논문		80	동일한 권·호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2편이내까지만 인정됨	
	국내일반학술지 9)		60		
학위논문 10)	박사학위논문		200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11)		50		
	국내전문학술대회발표논문 12)		30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 13)		20		
저서 (단행본) 14)	국외저서	초판	200		
		개정판	100		
	국내저서	초판	100		
		개정판	50		
	번역서 및 편역서	번역서	초판	80	
			개정판	40	
		편역서	초판	80	
			개정판	40	

부 문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 고
공모전 15)	국제	특선이상	100	
		입선이상	50	
	전국	특선이상	80	
		입선이상	40	
	지역	특선이상	20	
		입선이상	10	
전시회 16)	국제	개인전	150	
		초대전/단체전	50	
		심사위원	100	
	광역이상	개인전	100	
		초대전/단체전	30	
체육 17)	국제공인체육경기	입상지도	150	금(1위) : 150점 은(2위) : 130점 동(3위) : 110점
	국내공인체육경기	입상지도	100	금(1위) : 100점 은(2위) : 80점 동(3위) : 60점
특별연구	외부연구비수탁 18)	자연·공학·예체능 계열	30점*(순수간접연구비[만원])/100	
		인문·사회계열	60점*(순수간접연구비[만원])/100	
	연구보고서		50	(총장이 인정한 각종 교내외연구에 한함)

※ 공동연구업적의 배점 : 2인 공동은 1인 단독업적 배점의 70%, 3인 공동은 50%, 4인 이상 공동은 30%로 함.

- 1) 국제대회 또는 국제단체 수상 :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국제저명학술지 발행기관 및 저명한 국제단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수여된 상
- 2) 국내전국규모학회 또는 공공단체 수상 :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및 공공단체로부터 수여된 상
- 3) 국가훈장 :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훈장
- 4) 국가포상 :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포상
- 5) 논문 : 논문의 형식은 아래와 같아야 하며 중복 또는 표절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① 형식 :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또는 요약) 및 각주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정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② 중복논문 : 기 발표된 논문과 연구방법 또는 연구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논문, 또는 전문의 1/3이상이 동일한 논문
  - ③ 표절논문 : 타인이 발표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한 분량이 전 논문의 1/5 이상인 논문
- 6) 국제전문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 7) 국제일반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이외의 국제일반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 8)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및 후보지
- 9) 국내일반학술지 : 국내전문학술지 및 우리대학 연구소 이외의 국내일반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 10) 학위논문은 업적평가 기간 중 발표된 논문에 한함
- 11) 국제저명학술대회발표논문 : 국내·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발표자 분포가 3개국 이상)에서 강연,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대회의 논문집 혹은 초록집에 수록된 것
- 12) 국내전문학술대회발표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학술지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혹은 초록집에 수록된 것
- 13)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 : 국내전문학술대회발표논문 이외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혹은 초록집에 수록된 것(Work shop 포함)
- 14) 저서 : 저작물로 출판된 것으로 한하며, 분량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부여된 것에 한한다.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15) 공모전 : 미술대전, 공예대전, 섬유미술제, 산업디자인전 등 미술분야 공인전
  - ① 국제 :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상급 예술제(100점), 또는 10개국 이상 참가하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예술제(50점)에 신작품을 초대작가의 자격으로 출품 전시한 경

우

- ② 전국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미술대전에서 초대 및 추천작가 자격으로 출품 전시한 경우
  - ③ 지역 : 광역시·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미술대전, 공예대전, 서예대전, 섬유미술제, 산업디자인, 패션발표회 등
- 16) 전시회 : 신작으로 구성된 공동 작품전 또는 발표회로서 피평가자의 작품 수가 10점이상인 경우
- ① 개인 : 개인의 예술적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공연 또는 전시회로서 발표내용이 일관된 주제에 대한 신작품으로 구성된 것
  - ② 단체전 : 대학 전임교원급 예술가들로 구성된 공인 단체전(협회 회원전, 화랑초대전, 국내외 교류전) 또는 패션발표회 등
- 17) 체육
- ① 국제 공인 체육경기 : 2개국이상 참가하는 체육경기
  - ② 국내 공인 체육경기 : 국내에서 체육단체가 실시하는 체육경기
  - ③ 체육입상지도 : 국내 전국대회 지도선수 입상시 지도교수만 인정함
- 18) 외부연구비수탁
- ① 순수간접연구비는 연구부서에 적립되는 간접비
  - ② 순수개인연구과제(R&D 및 용역관련)만 인정한다.